

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심 영 택

행정자치부 세제과 행정사무관

I. 머리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¹⁾ 개정의 주요내용은 새차·헌차의 차등과 세 등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지방세제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재검토 조정,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과 세율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담배소비세율과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농지세의 농업소득세로의 전환과 과세대상의 조정,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 등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그 도입배경과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개정내용의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은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공포되었고,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은 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각각 공포되었다.